

대통령기록물의 이용 확대를 위한 현안과 쟁점

Issues to Expand the use of Presidential Records

박종연(Park, jong yeon)*

1. 들어가며
2.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활용 현황
 - 1) 대통령기록물 소장현황
 - 2)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와 이용현황 검토
 - 3)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열람
3.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이용 확대를 위한 현안
 - 1)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원문제공의 확대
 - 2)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와 공개 활성화
 - 3) 대통령기록 연구·활용지원의 확대와 콘텐츠 강화
4. 쟁점과 시사점
5. 나가며

* 한양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협회장(p0194111@gmail.com).

■ 투고일: 2023년 12월 31일 ■ 최초심사일: 2024년 01월 01일 ■ 최종확정일: 2024년 01월 26일.

■ 기록학연구 79, 205-230, 2024, <https://doi.org/10.20923/kjas.2024.79.205>

〈초록〉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물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활용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이용 확대를 위한 현안으로 적극적인 공개와 원문제공, 지정기록물 지정 해제와 공개, 연구·활용지원의 확대와 콘텐츠 강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쟁점과 시사점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업무재설계,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전문가 협업과 연구, 중장기 업무계획 마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대통령기록, 대통령지정기록물,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isclosure and utilization of presidential records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in order to expand the use of presidential records. In addition, as issues for the disclosure and expansion of the use of presidential records, the disclosure and provision of the original text, the cancellation and disclosure of designated records, the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f research and utilization support, and content were confirmed. In addition, as issues and implications for resolving these three issues, the redesign of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work, the revision of the Presidential Records Act, expert collaboration and research, and the preparation of mid- to long-term work plans were suggested.

Keywords : presidential records, Presidential records of restricted access, presidential archives, archives service

1. 들어가며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 대통령선물과 같은 물품이다.¹⁾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관리하고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2년마다 재분류를 하고, 생산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도록 하였다.²⁾ 또한 대통령기록물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에게 열람권을 보장하여 대통령기록물의 공개·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 조항은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대통령기록물 연구를 활성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와 이용에 관한 연구는 크게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기록의 공개와 이용 관련 연구는 크게 대통령기록 서비스와 관련 연구와³⁾ 온라인 콘텐츠 관련 연구로⁴⁾ 구분할 수 있다. 서비스와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3) 대통령기록 서비스와 관련한 최근 연구는 김지현, 「대통령기록관의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13(2), 2013; 김태영, 김건, 심갑용, 김용,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2), 2014; 이정현, 이운용, 방기영, 김용, 「Linked Open Data기반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보 서비스 확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2015; 이영지, 오계운, 정상준, 윤은하, 「국내 통합 대통령기록관 및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대통령기록물 서비스 현황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2018; 김도운, 이해영, 「대통령기록관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고도화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2021; 이세정, 김유승, 「우리나라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 방안 연구」,

관련한 연구는 검색, 열람, 연구지원, 서비스 현황 검토 등을 통해 대통령기록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온라인 콘텐츠 관련 연구는 대통령기록물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과 활용 등과 관련한 연구가 중심이다. 이러한 연구의 경우 공개와 이용 확대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검토와 더불어 미시적 실행 방안 등을 제시한 성과가 있으나 대통령기록의 공개와 이용 확대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 특히 대통령기록관의 업무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였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의 공개와 이용 확대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이용 확대는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하여 당대의 사회와 시대를 파악하는 연구의 활성화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되고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된 지 1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대통령기록의 공개와 활용 현황 검토를 위해 대통령기록관 업무 중심 현안을 확인하고 대통령기록의 공개와 이용 확대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기록의 공개와 이용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대통령기록관 업무에서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첫 번째 단계는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업무계획 및 각종 기록 등을 통해 대통령기록의 공개와 이용현황을 검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검토된 현황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활용 강화를 위한 업무 현안을 도출하고 현안과 관련한 쟁점 및 시사점

『한국기록관리학회』 21(3), 2021; 장윤서, 「민간대통령기록관 김대중도서관 기록정보서비스 현황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3), 2022. 등이 있다.

4) 대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 관련 연구는 김솔,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초·등교육 활용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2013; 송나라, 이성민, 김용, 오효정, 「자유학기제에 적용가능한 대통령기록물 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록학연구』 51, 2017; 장효정, 이용재, 김나경, 정진경, 「대통령기록관 마케팅을 위한 웹진(WebZine)의 설계 제안: 대통령기록관 ‘온기(On-記)’를 기반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 2022 등이 있다.

을 확인하여 대통령기록관리 업무의 개선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비스,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서비스, 유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서비스는 연구 범위에 제외하였다.

2.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활용 현황

1) 대통령기록물 소장현황

대통령기록의 공개와 활용 현황 검토를 위해 우선 대통령기록관의 소장기록물 현황을 확인하였다. 소장기록 현황 파악은 대통령기록관 보유기록물이 얼마나 국민에게 공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공개 방식 또한 확인하기 위함이다. 대통령기록의 소장현황을 위한 검토는 현재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의 공개문서, 관련 보고서⁵⁾ 등 공개된 자료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⁶⁾ 대통령기록관에 소장된 대통령기록은 총 38,691,532건으로 유형에 따라 문서, 데이터, 시청각 기록물, 웹 기록물, 간행물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대통령기록물은 1,493,466건으로, 전체의 약 8%를 차지한다.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인 제16대 대통령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37,198,066건으로, 전체의 약 92%를 차지한다. 이관된 기록물의 다수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웹 기록물로 각각 10,523,084건 18,956,574건으로 약 79% (29,479,658건)에 해당하며, 나머지 21%(7,718,408건)의 경우 문서

5) 2022년 대통령기록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년 대통령기록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참조.

6) 2023년 10월 15일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검색결과.

류가 약 55%(4,232,657건) 시청각 기록물이 약 45%(3,447,172건)를 차지하였다.⁷⁾

약 3천8백만 건의 대통령기록물 중 2023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기록물 목록은 2,974,254건으로⁸⁾ 이는 전체 소장기록 중 약 8%의 기록물 목록이 공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⁹⁾ 다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웹 기록물을 제외하면 대통령기록관에 소장된 기록의 약 34%가 목록은 공개하고 있다. 한편 목록 공개 전체 2,974,254건 중 약 80%인 2,386,451건이 제16대 대통령 이후 기록물에 해당하며, 제16대 대통령 이전의 경우 587,803건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현재 목록 공개의 다수가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제16대를 기준으로 대통령기록관 소장현황과 목록 공개의 비율을 비교해 본다면 제16대 대통령 이전 기록물의 경우 전체 보유기록 중 약 39%가 목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제16대 대통령 이후 기록물은 약 31%의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된다. 한편 제15대 대통령기록물 952,342건을 제외하고 소장현황과 목록 공개 비율을 살펴본다면 제1대에서 제14대 소장 대통령기록물 541,124건 중 약 63%인 343,550건의 목록이 공개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문서류, 시청각기록,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웹기록을 제외한 행정박물은 11,772건, 간행물은 26,807건으로 확인되었다. (2023-10-15 검색결과)

8) 통계와 웹사이트의 기록물 수량이 1건 차이가 있었으며 웹페이지에 공개하는 수량은 2,974,255건으로 확인되었다. (2023-10-25 검색결과)

9) 2024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검색방식 개편으로 인하여 현재 전체 수량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대통령별 검색을 통하여 확인되는 총 수량은 중복 검색 결과를 포함하면 3,315,077건이다.

〈그림 1〉 대통령기록관 소장 현황과 콘텐츠 현황

영역	문서량 (건)		서명수 (건당 수) (건당)	행방자료 (건당 포함 건)	행정정보 대수화 건(건)	영사각 (건)	간행물, 도서 등 (건/개)	기록														
	원본 (건)	복사본 (건)						문서	사진	영상	음성	영상	문서	사진	영상	음성	영상	문서	사진	영상	음성	영상
역사관	95,541	76,779	-	65,305	36	-	-	3,941	11,337	37	36	2,370	17	0	5,248	0	0	1,735	88	5	0	
제16대 (2013~2017)	388	113	-	-	-	-	-	115	308	0	0	0	0	0	33	0	0	0	0	0	0	
광안선	3,057	3,050	-	295	-	-	-	312	5,810	0	0	240	0	0	314	0	0	881	20	7	0	
역사학	81,818	64,179	-	58,527	623	-	-	549	10,280	400	529	0	1,815	1	56	9,647	142	906	2,680	135	202	0
외교학	46,387	11,319	-	19,677	11,643	-	-	3,548	25,746	3,644	1,796	1	2,389	41	37	303	0	125	1,020	21	3	0
비밀문 (2013~2017)	49	48	-	0	1	-	-	0	54	0	1	0	0	0	0	0	0	0	0	0	0	0
안보관	303,746	46,806	-	54,241	2,048	-	-	601	412,719	85	262	0	30,716	41	7	2,108	683	124	2,330	16	41	1
노태우	64,650	45,841	-	5,814	5,573	-	-	400	24,765	148	179	0	1,880	24	14	1,245	0	35	1,741	113	54	0
김영삼	140,308	101,143	-	38,170	3,673	-	-	2,073	143,325	1,173	1,302	15	22,295	5,056	33	945	229	2,849	1,813	119	26	0
김대중	950,342	371,634	-	158,829	2,381	56,877	411,876	1,745	1,915,517	1,563	105	1	13,314	10	1,058	2,545	0	1,000	1,042	101	5	0
노무현	717,389	561,305	1,079,261	739,629	2,802	506,377	4371,158	14,857	683,527	5,023	1,337	1,883	11,824	3,109	2,023	9,229	108	1,899	2,832	64	10	0
공민 (2013~2017)	1,356	338	-	1,548	-	-	-	42	416,257	6,879	882	0	4,904	97	3,617	817	2,671	2,263	20	0	0	0
이명박	9,950,377	371,432	634,389	282,218	4,546	3,871,080	5,134,137	7,205	2,963,246	1,488	1,100	0	27,654	10,641	467	1,312	0	1,571	1,108	300	0	0
박근혜	8,314,746	227,710	527,207	273,387	2,302	3,395,025	3,518,192	2,143	1,412,317	32	27	0	14,880	202	91	0	0	0	0	0	0	0
홍준표 (2013~2017)	300,330	4,901	996	12,258	28	377,056	-	368	1,532,447	47	3,895	56	2,280	400	0	30	1,350	0	71	10	0	0
김정은	11,363,115	152,146	741,466	2,127,334	3,234	3,217,536	43,920,337	2,027	0	0	0	0	0	0	0	0	0	319	15	0	0	0
총계(건)	38,693,132	1,945,505	2,810,719	3,809,276	37,520	10,717,961	19,364,450	40,091	2,494,881	21,528	12,577	1,283	438,102	54,139	4,034	5,905	12,812	14,009	1,331	267	7	0
총용량											3,934,254										79,267	

출처: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검색일 2023. 10. 15) (<https://www.pa.go.kr/portal/info/report/recordReport.do>)

목록 공개와는 상대적으로 원문공개는 총 79,267건으로 이중 제16대 이후가 32,889건이며 제16대 이전은 46,378건으로 확인되었다. 원문공개는 디지털화된 기록의 원문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링크 공유가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검색을 통하여 실제 원문이 제공되는 기록은 13,630건에 불과하고 이중 제16대 대통령 이후가 5,411건이며 일반문서는 2,758건, 간행물 3건, 시청각 2,588건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수량의 차이는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제 제공되는 원문이 콘텐츠와 결합하여 제공되는 형태에서 나타나는 수치상의 차이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대통령기록물 원문제공 현황

총 2,974,255개 중 2,974,255개	총 1,425,818개 검색
<p>검색대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기록물 └ 원문 제공 (13,630) └ 원문 미제공 (2,960,625) └ www.pa.go.kr 	<p>검색대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기록물 └ www.pa.go.kr

출처: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검색일 2023. 10. 15) (<https://www.pa.go.kr/portal/search>)

2)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와 이용현황 검토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와 이용현황 검토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기록에 대한 활용방안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와 사전정보 공표 목록을 통해서 진행하였다. 검토 대상은 온라인 콘텐츠와 뉴스레터, 우수논문 공모전 등으로 선정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는 대표적으로 ‘기록컬렉션’이 있다. 기록컬렉션은 정책기록, 연설기록, 정보공개기록, 지시사항, 회의록(국가안전보장회의,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국정자문회의), 접견인사기록, 이 기록 그 순간, 일정일지기록(월별일정보기, 연도별 일정 보기), 편지, 사진·동영상, 해외순방, 정책간행물, 선물·행정박물, 역대 대통령 웹 기록물(웹사이트, SNS), 특별한 만남 등으로 온라인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중 연설기록의 경우 8,980건의 역대 대통령의 연설기록(연설물, 연

설음성, 연설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진·동영상 또한 10,656건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정책기록의 경우 2013년부터 소장기록을 분석하여 현재까지 ‘경제, 외교, 문화, 노동, 지방자치, 사회통합, 재난관리, 기록관리, 경제정책, 사회정책 및 혁신관리’의 10개 분야에서 콘텐츠가 제작되었다. 분야별 콘텐츠는 대통령별 관련 기록의 현황을 소개하는 동시에 원문 또한 제공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역대 대통령 웹 기록물 중 SNS 기록을 별도의 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 뉴스레터 형태의 ‘대통령기록관의 온기’가 2022년까지 발행되면서 대통령기록관 소식과 대통령기록에 대한 소개를 제공하고 있다. 대통령기록에 관한 연구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기록물 우수연구논문 공모 또한 진행되어 2022년 기준으로 총 8권의 논문집이 발행되었으며, 학술연구 지원서비스와 체험 수기 공모전이 진행되었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이용현황은 전시관 관람객 현황과 기록물 열람 현황 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데이터 및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관계로 대통령기록관 사전정보공표목록을 통하여 관람객 현황과 기록물 열람 현황을 확인하였다.¹⁰⁾ 2008년부터 운영된 대통령기록관 전시관은 2015년 세종시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연간 1만 명 내외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평균적으로 연 1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중 일반 관람객도 연 1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¹¹⁾ 관람객과 더불어 견학·체험프로그램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통령기록 체험교실, 견학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등도 운영되었다.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열람 현황은 개인열람과 기관열람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²⁾ 기록 열람은 2017년까지는 편차가 있으나

10)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 중 46번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열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 코로나 19로 관람객의 감소한 2020년~2022년까지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적게는 1천 건 많게는 3만 건 내외의 열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징적으로 2018년의 경우에는 142,612건의 열람이 있었으며, 이 중 135,044건이 기관열람이었다. 2019년부터의 열람은 약 7만 건에서 4만 건 내외로 확인되며, 개인열람의 비중이 기관열람보다는 점차 확대되었고 볼 수 있다.

〈표 1〉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열람 현황

연도별 / 구분	합계	개인열람	기관열람
2008	6,027	3,010	3,017
2009	2,553	1,558	995
2010	3,767	2,004	1,763
2011	6,458	2,782	3,676
2012	29,106	1,065	28,041
2013	5,789	1,060	4,729
2014	32,221	1,764	30,457
2015	1,531	507	1,024
2016	5,389	4,714	675
2017	10,453	3,201	7,252
2018	142,612	7,568	135,044
2019	78,544	28,227	50,317
2020	44,318	26,119	18,199
2021	28,900	20,172	8,728
2022	40,416	28,994	11,422
합계	438,084	132,745	305,339

출처: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열람 현황(<https://www.pa.go.kr/portal/info/dataOpen/beforeDataList.do>)

- 12) 대통령기록전시관 관람객 현황, 대통령기록관 사전정보공표목록(<https://www.pa.go.kr/portal/info/dataOpen/beforeDataList.do>). 온라인 접속을 통한 열람 등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3)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열람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 현황과 더불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현황 또한 검토하였다.¹³⁾ 다만 지정기록물의 경우 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그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기에 지정기록에 관한 언론보도를 추가로 검토하였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은 국회 재적의원 2/3의 의결, 고등법원 영장에 의한 검찰의 열람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¹⁴⁾ 우선 국회의 열람은 총 2회로 2008년 노무현 대통령 지정기록물 중 제16대 쌀 직불금 관련 사안으로 국회에 사본을 제출하는 형태로 열람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2013년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하여 열람과 자료 제출이 이뤄진 경우이다. 검찰에 의한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은 2023년 5월 기준으로 총 14차례 확인되며, 대부분 사본을 제공한 형태의 열람이 수행되었다. 지정기록물 열람을 통해 국회 및 검찰에 제공된 지정기록물은 약 2만여 건이 넘으며, 이 기록들은 대부분 정치적·사법적 사안을 위해 열람하여 활용되었다.

13) 지정기록물에 대비되는 기록을 일반기록물로 구분하여 통칭한다.

14)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직무상 접근은 실제 직무상 접근을 수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기에 제외하였다. “아까 지난해 10월에 지정기록물 해제를 위한 집중 회의를 했다고 말했는데, 그때 가서야, 즉 부임한 지 1년이 되어서야 내가 알게 된 게, 노무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중 전자 기록물이 아닌 비전자 기록물의 목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오마이뉴스, “노무현 대통령 지정기록물, 15년간 방치됐다”, 2023.06.1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7259. 검색일 : 2023.09.03)

〈그림 3〉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현황과 제출문건

	일시	대상 기록	사유	제출 문건(지정기록물)	수사기관
1	2008. 9.10	노무현 대통령	e-지원 대통령기록물 병하마을 유출	BH이관매체 및 병하 반환본, 데이터 복제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2	2013. 8.16~11.14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관련	사본 23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3	2017. 12.8~14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침몰 관련	사본 29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4	2018. 3.12	이명박 대통령	영포빌딩 대통령기록물 유출	목록 417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5	1차 2018. 7.16~10.23 2차 2018. 11.1~8	이명박 대통령	기무사 댓글 관련	사본 1만3879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6	2018. 10.1~8	박근혜 대통령	개업령 관련	사본 4958건	군검 합동수사단
7	2018. 12.28	이명박 대통령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관련	사본 50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8	2019. 4.15~5.27	박근혜 대통령	김학의 전 차관 인사 직권남용	사본 61건	서울중앙지검 '과거사위 수사권고 수사단'
9	2019. 11.26~12.3	이명박 대통령	국정원 국고 손실	사본 60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10	2020. 4.7~6.5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특조위 업무 방해 및 유가족 사찰	사본 1002건	서울중앙지검 세월호특수단
11	2021. 6.28~29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증거인멸	사본 461건	4·16 세월호 특검
12	2022. 8.19~2023. 2.1	문재인 대통령	활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사본 338건	대전지검 형사4부
13	1차 2022. 8.19~22 2차 2022. 8.26	문재인 대통령	탈북 어민 강제 복송 관련	사본 3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14	1차 2022. 9.1~13 2차 2022. 9.19~20 3차 2022. 9.27 4차 2022. 10.4 5차 2022. 10.31 6차 2022. 11.24 7차 2022. 12.8 8차 2022. 12.19	문재인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사본 266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자료: 대통령기록관이 요청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

출처: 시사IN, 윤석열 정부 1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역대급, 2023.05.22.

3.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이용 확대를 위한 현안

1)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원문제공의 확대

대통령기록의 공개와 이용 확대를 위한 업무 중심 현안은 국민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대통령기록을 대통령기록 포털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점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기록은 공공기록과 달리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 임기종료 1년 전부터 이관을 준비한다.¹⁵⁾ 5년마다 임기종료 후 즉시 대량의 기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현재 상황에서 선제적 공개와 제공은 물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기

1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록에 대한 선제적 공개와 제공의 필요성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의 필요성과 더불어 대통령기록물법 제7조제2항의 ‘생산·관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공개와 원문제공의 확대를 위하여 첫 번째 검토되어야 할 것은 소장 중인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재분류 확대이다. 대통령기록관의 공개재분류는 ‘기록물 생산 또는 이관 당시 비공개로 책정된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비공개 사유가 소멸한 기록물을 공개로 재분류하여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¹⁶⁾이다. 이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에 따른 공개 원칙의 준수를 위해 비공개 기록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를 추진하는 업무이다.

아래 표와 같이¹⁷⁾ 지난 10여 년간 대통령기록관은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수백만 건의 공개재분류를 수행하였다. 그런데도 아직 목록 공개되는 기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적 충원과 관련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기록에 대한 재분류 주기의 실효성 검토를 통하여 공개재분류된 기록이 신속하게 공개될 수 있는 대통령기록관 내 관련 업무 간 협업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¹⁸⁾

16) 국가기록원, 『국가기록관리 혁신 백서』, 2020, p.296.

17)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 중 37번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이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이관된 날부터 5년 경과 후 최초 분류를, 첫 번째 재분류 후 2년마다 재분류를 해야 한다. 이는 비공개 기록의 적극적인 공개를 위한 법률 조항이지만, 공개재분류 대상 기록의 양과 담당 인력의 한계, 업무 과중과 중복 검토 등으로 그 실효성이 재검토돼야 할 필요가 있다.

〈표 2〉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이력

구분	수행량 (건)	재분류 결과				
		공개			비공개	보류
		소계	전부 공개	부분공개		
합계	6,520,399	4,838,028	2,666,763	2,171,265	1,662,782	19,589
이승만	13,866	13,320	2,675	10,645	546	-
허정(代)	261	240	98	142	21	-
윤보선	1,664	1,655	1,179	476	9	-
박정희	50,797	37,065	32,511	4,554	13,732	-
최규하	2,708	2,479	2,268	211	229	-
박충훈(代)	2	2	-	2	-	-
전두환	43,549	15,178	8,964	6,214	28,371	-
노태우	37,039	14,118	8,068	6,050	22,921	-
김영삼	60,583	31,877	14,834	17,043	22,490	6,216
김대중	191,273	134,382	48,594	85,788	44,626	12,265
노무현	1,696,995	1,300,197	520,922	779,275	395,690	1,108
고건(代)	627	445	178	267	182	-
이명박	4,421,035	3,287,070	2,026,472	1,260,598	1,133,965	-

출처: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이력 (2022.12.31. 기준)(<https://www.pa.go.kr/portal/info/dataOpen/beforeDataList.do>)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재분류가 비공개 대통령기록에 대한 공개를 중점에 두는 업무라면 이보다 적극적인 공개를 지원할 수 있는 업무는 이관받은 기록물에 대한 정리·기술이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는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단위과제가 누락되거나 보존기간이 미책정되는 등의 무질서한 상태로 이관·수집’¹⁹⁾되기도 한다. 그로 인하여 대통령기록관은 이관받은 기록물에 대한 정리·기술을 통해 계층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접근 편의를 확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19) 윤정훈. 「대통령기록물 평가체계 개선방안」.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3, 2019. pp. 17~18.

정리·기술은 단순히 기록의 조직화를 넘어 이관 기록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처음으로 이관받은 대통령기록에 대한 '기록 조사 및 검토'를 수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공개할 수 있는 기록을 가장 빨리 확인하는 단계이며, 대통령기록의 누락 메타데이터 확보와 서비스를 위한 분류체계 마련하는 첫 단계이다. 그리고 이 단계를 통해 기록의 재조직화가 완성되어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은 2017년 이후 대통령기록에 대한 정리·기술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2017년 이후 이관된 대통령기록의 공개와 이용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통령기록에 대한 정리·기술 업무 매뉴얼 또한 2013년에 발간된 『대통령기록물(08년 이관) 정리·기술 백서』²⁰⁾ 이후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나마도 이 매뉴얼의 경우 '전자기록의 경우 1차 정리작업 후 추가 정리작업이 수행되지 않으며, 비전자기록의 경우 2차 정리작업 과정에서의 일부 작업의 누락, 실물 기록의 조사 및 검토의 미수행 등'²¹⁾ 기록 조사 및 검토과정이 부재한 상태였다. 결국 안정적인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소장기록 정리·기술이 선행되어야 하며 업무 매뉴얼 또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²²⁾

공개와 이용 확대를 위한 세 번째 업무 중심 현안은 대통령기록에 대한 평가체계의 안정화이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평가는 보존기간 30년이 지난 기록에 대한 폐기 또는 보존기

-
- 20)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08년 이관) 정리·기술 백서』, 2013.
 21) 양인호, 「대통령기록 분석을 통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3), 2023, p.104 ; 양인호의 연구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중단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대통령기록관 소장기록물 정리기술 연구' (입찰공고 번호 20230406897 - 00)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22) 2023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 소장기록물 정리기술 연구' (입찰공고 번호 20230406897 - 00)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소장기록물 분류체계 개선방안 마련, 기술체계 개선방안 마련이 주요 과업으로 제시되어 있다.

간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기록의 경우도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당 기록물의 보존 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폐기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기에 기록관에서 평가·폐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보존기간 30년 이하의 기록들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²³⁾되기에, 대통령기록관에서는 한시기록물에 대한 평가 또한 수행하는 실정이다. 이는 한시기록물에 대한 평가·폐기를 위한 제도적 미비 사항의 해소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량 이관에 따라 생산기관 의견 조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평가·폐기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부재와 폐기 근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4〉 보존기간별 이관 및 생산기관에서의 폐기 일정

구분		생산연도				
		임기 1년차	임기 2년차	임기 3년차	임기 4년차	임기 5년차
보존 기간	1년	폐기 가능	폐기 가능	폐기 가능	이관 대상	이관 대상
	3년	폐기 가능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이관 대상
	5년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이관 대상
	10년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이관 대상
	30년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준영구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영구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이관 대상
	현 대통령 임기	폐기 가능	폐기 가능	폐기 가능	폐기 가능	폐기 가능
	차기 대통령 임기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이관 대상

출처: 윤정훈, 「대통령기록물 평가체계 개선방안」, 2019, p.14.

23) 윤정훈, 앞의 글, pp. 13~14.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평가·폐기 심사 및 심의는 2020년 기준 총 14회의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통해 전체 22,557권을 심의하였고, 재책정 13,207권, 보류 8,861권, 폐기 408권이고 실제 폐기는 진행되지 않았다.²⁴⁾ 즉, 한시기록물 중에서도 재책정과 보류 등으로 인하여 공개재분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록이 다수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하여 대통령기록의 공개가 늦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에 대한 평가체계의 안정화를 통한 공개대상의 확대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평가 시기와 방법에 대한 전향적인 방법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 이관 후 적극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기록이 공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2)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와 공개 활성화

제16대에서 제18대까지 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약 80만 건에 달한다. 제16대 대통령기록물 총이관 수량의 1/3, 제17대 대통령기록물 총 50만 건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5만 건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18대 대통령기록물 중 총 40만 건 중 20만 건이 지정기록물로 등록되어 있다.²⁵⁾

〈그림 5〉 대통령지정기록물 현황

구분	16대(노무현)	17대(이명박)	18대(박근혜)
전자	18만	7만	10만
비전자(대부분 종이)	15만	18만	10만
합계	33만	25만	20만
총계	총 80만		

출처: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p.33. 재인용

24)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통령기록물 평가 기준 재설계 연구』, 2021, p.41.

25)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글, pp.33~34, 재인용.

2022년까지 지정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보호기간이 1~10년인 제16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이 5년인 제17대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보호기간이 1~5년인 제18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총 7만 4천여 건이었다. 그리고 2023년 2월 25일에는 제16대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보호기간 15년이 지나는 지정기록물 8만 4천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지정기록물 1만 4천여 건 등 총 9만 8천여 건이 지정 해제되어 지금까지 총 17만 2천여 건이 지정 해제되었다. 그러나 지정 해제된 대통령기록에 대한 현황과 목록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2023년 2월에 지정 해제된 9만 8천여 건의 경우 2023년 10월 현재까지 그 목록 또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2월 지정 해제된 9만 8천여 건에 대해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 후 일반기록물의 경우 공개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한 후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홈페이지)에 2023년 하반기에 게재”²⁶⁾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정 해제된 대통령기록에 대한 공개와 이용을 확대를 위해서 대통령기록관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²⁷⁾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을 독려하고, 더 철저한 관리와 활발한 활용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중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는 대통령기록물 생산을 독려하는 동시에 활용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일정 기간 강력한 보호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되, 더욱 많은 대통령기록물이 남겨 후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²⁸⁾ 그러나 지금까지

2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보호기간 만료된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분류작업 등을 거쳐 추후 공개 예정, 2023. 02.24; 행정안전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2.25.) 이후, 비밀/일반 기록물 구분 등 후속절차를 법령에 따라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 03.21

27)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 해제된 기록물의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 지정 해제된 약 17만 건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그 제목과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으며, 지정 해제된 기록물을 활용한 연구와 콘텐츠 또한 마련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목적, 특히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의 본질을 위한 지정 해제와 해제된 기록물의 선제적 공개를 위해 현실적·실무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 근간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를 위한 업무개선도 검토되어야 한다.

3) 대통령기록 연구·활용지원의 확대와 콘텐츠 강화

대통령기록 온라인 콘텐츠의 개선은 대통령기록관에 소장된 대통령기록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될 수 있다. 과거 연구의 개념은 전문 분야의 학자나 전문직 종사자들만이 수행하는 고도의 지적 행위였다. 그러나 오늘날 연구 개념은 온라인을 통한 정보에 대한 접근 일상화로 인하여 연구자와 더불어 시민들도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관심 분야에 관한 집중적인 탐구까지로 확장되어 전문직 학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영역에서 시민의 영역으로 확

28) 지정 해제와 더불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 등의 열람 권한도 대통령기록물의 이용 활성화에 중요한 지점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는 열람 권한을 갖고 있는 전직 대통령(대리인 등 포함)이 기록물을 활발하게 열람하고 해제 전이라도 지정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역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대통령기록물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3-2,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가 대통령기록관리 제도의 분기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2023. 2. 24. (<https://www.archivists.or.kr/1872>))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직 대통령의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황에서 그 가족 간 합의로 지정된 대리인이라고 해도 비밀기록물은 열람할 수 없고, 대리인은 가족 간 합의로 1명만 추천이 가능하며, 합의가 안 되는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순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이에 기록관리단체는 열람범위 과도한 제한의 문제를 제기한 의견서를 4월 17일에 제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개와 이용 확대를 보장하기를 촉구하였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2023, 4.17. (<https://www.archivists.or.kr/1877>))

장된 것이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맞게 기록정보서비스 특히 연구 분야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통령기록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 내 업무에는 부재하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 제22조제6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 지원’,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센터 설치’, 제28조에 따른 ‘연구활동 지원’ 등이 대통령기록관의 연구 관련 업무이다.²⁹⁾ 대통령기록은 특정 분야의 주제 아카이브와는 달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기록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위해서라도 대통령기록관에서의 연구는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공공 아카이브의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을 제외하고는 연구기능이 제도적으로 확립된 곳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기록에 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기록관 내에서의 연구가 선행될 수 있도록 연구지원 플랫폼의 확장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연구지원 또한 기존의 연구지원 방식 플랫폼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 공모사업의 추진, 분야별 전문연구자와의 협업을 통한 대통령기록에 대한 분석과 콘텐츠화,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을 통하여 일회성 콘텐츠와 구분되는 연속콘텐츠 기획 등이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인적 인프라 확대 방식도 고민하여야 한다.

4. 쟁점과 시사점

대통령기록의 공개와 이용 확대를 위한 업무 현안인 ‘공개와 원문제

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2의 제6항에 따라 기록서비스과에는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지원’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공의 확대, 지정기록물의 지정 해제와 공개, 연구·활용지원의 확대와 콘텐츠 강화'를 살펴보았다. 세 가지 업무 현안에 대한 쟁점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기록관의 활동과 업무 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대통령기록관리 업무재설계의 필요성이다. 대통령기록관리 업무재설계는 대통령기록의 생산과 이관, 분류와 정리, 평가·폐기, 보존과 활용의 전 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기반으로 각 업무영역 간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여 상세업무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제도, 방법, 재정적 측면과 같은 구조적 변화나 다른 어떠한 형태의 개선보다는 빠르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존의 업무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직문화를 비롯하여 핵심적인 프로세스를 고객지향적으로 최적화하며 조직의 전 부문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존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구조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것³⁰⁾이다.

대통령기록관리의 업무재설계를 위해서는 최고관리층의 참여와 지원 그리고 참여 지향적 조직문화가 성공적인 추진 전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³¹⁾ 즉 최고관리층의 참여와 지원 그리고 참여 지향적 조직문화를 통하여 혁신 지향적 가치관·행태변화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대통령기록관리에 대한 이해와 능력 및 전문성이 발현될 수 있을 것이고 인적 충원, 시스템, 제도 개선의 기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통령기록물법 재개정의 필요성이다. 공공영역의 업무재설계와 더불어 일정 부분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우선 공개재분류의 활성화를 위한 쟁점 사항은 공개재분류의 시기의 부분이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에 따라 비공개 대통령기록

30) 김성, 「지방정부의 BPR 도입에 관한 연구: BPR 도입의 영향요인과 예상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p.10.

31) 대통령기록생산기관과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이 모두 포괄된 형태가 요구된다.

물의 경우 최초, 2년, 5년 주기 재분류를 실시하고 있다. 잦은 공개재분류가 공개재분류의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사항과 공개재분류를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은 공공기록물법의 평가체계와 다른 대통령기록물 평가체계 수립의 필요성이다. 생산과 이관과 관련하여 다면평가가 요구되는 대통령기록은 그 특성으로 인하여 공공기록과는 다른 평가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법에 제13조의 폐기 조항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된다. 다만 이 경우 한국의 공공기록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지정 해제 기록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공유가 가능한 제도화로, 고의로 또는 업무 미숙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지정기록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해야 하며, 특히 지정 해제와 관련한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도록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마지막은 연구지원 기능을 넘어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연구기능 마련이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의 경우 공공기록물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의 연구·보급'의 연구기능이 있다. 또한 문화기관인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라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정의되고 박물관의 사업에도 연구기능이 포함되며,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³²⁾, 대학 박물관과 미술관 또한 연구기능을³³⁾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화기관이며 아카이브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기록관 또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로 연구기능을 부여하여 대통령기록관 자체의 연구기능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³⁴⁾

3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3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5조.

34) 만약 제도적 개선이 어렵다면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을 통한 연구기능 활성화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셋째 전문가 협업체계 마련과 연구 결과 외연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 확대이다. 2023년 대통령기록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보완 필요사항으로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물의 대국민 지지 및 긍정적 이미지 제고 필요’가 확인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대통령기록관리 주요 정책성과 적극 확산·공유’를 제시하면서 ‘정책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관내 워크숍과 세미나와 학·협회 세미나·학술발표, 온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요 정책성과를 대국민 공유·확산하기로 하였다.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려는 방법으로 정책성과에 대한 공유·확산의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대통령기록은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생산·관리되는 기록이 아니기에 다방면의 전문가와의 협업과 협력을 통해 대통령기록에 대한 해제와 컬렉션·콘텐츠의 제작을 추진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과를 꾸준히 외연화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대통령기록관과 같이 연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비, 장학금 지원, 세미나, 강연회, 학술회의’³⁵⁾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중장기 업무계획의 마련과 구체적 실행 방안의 필요성이다. 대통령기록관이 국가기록원에서 분리된 지 2년여가 흐른 현시점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중장기업무계획에 대한 수립이 필요하다. 단순히 계획만이 아니고 이 계획에 따라 실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2022년도 대통령기록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이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중장기 업무계획은 과제별, 업무별 계획이 아닌 대통령기록관의 모든 업무와 대통령기록관리제도를 포괄하는 중장기 업무계획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5) 김지현, 앞의 글, pp.212~214.

5. 나가며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관의 소장기록 현황과 서비스 현황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대통령기록의 공개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 쟁점 그리고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소장현황 분석 결과 공개 및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업무 현안과 쟁점들 또한 검토하였다.

앞서 검토한 현황과 현안 그리고 쟁점과 관련하여 대통령기록관 2023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다수의 일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된다. 또한 비효율적인 대통령기록관의 업무절차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관받은 대통령기록물의 등록과 공개 업무가 이원화되어 공개 시점이 늦어지는 점과 소장기록의 정리기술과정에서 1차 공개재분류를 수행하는 등의 업무 개선방안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가장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대통령기록관의 전문성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다. 2023년 5월 기록관리 전문가로 임명된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되고 2023년 11월 행정직 출신의 대통령기록관장이 임명되었다. 이는 지난 시간 이루어 놓은 대통령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현안과 쟁점을 해결할 최종결정권자의 전문성 부재를 의미한다. 최고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대통령기록관리가 다시 한번 비상 상황을 맞이한 것이며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문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과 미래 비전 설계가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 중요기록이며 국민의 기록인 대통령기록이 또다시 격랑에 빠지지 않도록 대통령기록관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우선 공개대상 자료만을 대상으로 대통령기록관의 업무 현안과 쟁점을 검토하였기에 실제적

인 업무 현안의 해소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둘째, 정책, 제도, 업무, 보존, 수집 등의 대통령기록관리 업무영역을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못하여 현안과 쟁점의 폭을 제한적으로 설정하였으며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선언적인 내용만을 다루었다. 현안에 대한 대안은 쟁점과 시사점에 일부 다루었으나, 상세한 설계 및 예시를 포함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업무 현황과 업무 현안 분석을 통한 연구를 위해서 요구되는 실증적 검토가 부재하였다. 대통령기록과 관련한 연구자료에 대한 발굴과 더불어 인터뷰 및 설문 등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메울 필요가 있기에 이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같음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3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948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36호.
 대통령기록관 (2022), 2022년 대통령기록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통령기록관 (2023), 2023년 대통령기록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가기록원 (2020), 국가기록관리 혁신 백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2013), 대통령기록물('08년 이관) 정리·기술 백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대통령기록물 평가 기준 재설계 연구, 대통령기록관.
 김성 (2006), 지방정부의 BPR 도입에 관한 연구: BPR 도입의 영향요인과 예상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술 (2013), 대통령기록물 온라인 콘텐츠의 초등교육 활용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김지현 (2013), 대통령기록관의 검색, 열람 및 연구지원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김태영, 김건, 심갑용, 김용 (2014), 대통령기록관의 연구지원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2).

- 이정현, 이윤용, 방기영, 김용 (2015), Linked Open Data기반 대통령기록관 기록정보 서비스 확장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 송나라, 이성민, 김용, 오효정 (2017), 자유학기제에 적용가능한 대통령기록물 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록학연구 51.
- 이영지, 오계윤, 정상준, 윤은하 (2018), 국내 통합 대통령기록관 및 민간 대통령 기념재단의 대통령기록물 서비스 현황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 윤정훈 (2019). 대통령기록물 평가체계 개선방안.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3, 국가기록원.
- 김도윤, 이해영 (2021), 대통령기록관 학술연구지원서비스의 고도화 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 이세정, 김유승 (2021), 우리나라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3).
- 장윤서 (2022), 민간대통령기록관 김대중도서관 기록정보서비스 현황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3).
- 장효정, 이용재, 김나경, 정진경 (2022), 대통령기록관 마케팅을 위한 웹진(WebZine)의 설계 제안: 대통령기록관 '온기(On-記)'를 기반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
- 양인호 (2023), 대통령기록 분석을 통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3(3).
- 시사IN, 윤석열 정부 1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역대급, 2023.05.2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31>.
- 오마이뉴스, “노무현 대통령 지정기록물, 15년간 방치됐다”, 2023.06.19.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7259.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보호기간 만료된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분류작업 등을 거쳐 추후 공개 예정, 2023.02.24.
- 행정안전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2.25.) 이후, 비밀/일반 기록물 구분 등 후속절차를 법령에 따라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03.21.
-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23-2,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가 대통령기록관리 제도의 분기점임을 인식해야 한다.」, 2023. 2. 24. (<https://www.archivists.or.kr/1872>).
-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록학계 및 관련 단체의 입장문」, 2023, 4.17. (<https://www.archivists.or.kr/1877>).
-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https://www.pa.go.kr>).